

##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0. 2.  
제출자 : 이천시장

###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준비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보건휴가를 부여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 나. 만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1시간내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4항).
- 다.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준비휴가(퇴직전 3개월이내)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9항).
- 라.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함(안 제24조 단서).
- 마. 현행규정상 특별휴가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족윤리 및 남계와 여계친족간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3촌이내의 친족은 모두 포함)시키기 위하여 경조사의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함(별표 3).

이천시조례 제 호

##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22조제5호증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제5호(종전 제5항제5호)증 “수행한 때”를 “수행하였거나 으뜸·모범공무원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때”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증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회 - 1차 자치행정위원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 ----- -----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5. -----수행하였거나 _____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때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재직기간중에----- ----- -----
⑦(생략)	⑧(현행 제7항과 같음)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정년퇴직 이나-----명예 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 -----
⑨(생략)	⑩(현행 제9호와 같음)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현 행		개 정 안
<b>[별표 3]</b> 경조사별휴가일수표		<b>[별표 3]</b> 경조사별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잡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처)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지계존속	5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 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